

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1 - 126호

『제품안전기본법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“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3월 21일
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

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

-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-

< 요약 본 >

2011. 3.



기술표준원

□ 주요 선진국의 제품안전정책

○ 종 합

- 자율안전관리의 심화·확산과 제품안전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력 시스템 강화
- 유통·사용단계에서 시장감시 활동 강화 및 이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/분석/사고조사/후속조치 등 체계 정비
- 사업자·소비자의 자발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품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·홍보 활동 강화
- 위해제품 유통차단·선제적 관리를 위해 수입제품 관련 정보공유, 제품안전교육프로그램, 전문가 교류확대 등 국가간 공조 확대(미-중국, EU-중국 등)

○ 국가별

- ◆ (미국) 모든 제품안전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을 관리하며,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
- ◆ (일본) 정부기관간 위해(사고)정보수집/분석/조사 체계 정비를 통해 사후 관리에 집중 및 사업자소비자의 자발적인 제품안전확보 유도책 확대
- ◆ (EU) 기업들의 자발적인 제품안전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EU 차원의 사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·배포하고 있으며, 수입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간 제품안전 공조 강화
- ◆ (영국) 중앙지방 정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제품안전 사후관리 활동 수행 및 수입품에 대한 감시 강화
- ◆ (독일) 기업들의 자발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유도하며, 위해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제품안전성 검사 등 시장감시·감독 활동 강화

□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책목표

정책 목표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

정책 방향 (SLOGAN)

1 사업자, 소비자의
자발적 제품안전
관리 참여

2 안전한 제품유통
을 위한 정보 및
협력 확대

3 제품안전 사고
재발방지를 위한
시스템 확립

4 글로벌 협력
강화 및 수입품
관리 내실화

17개 핵심추진과제

1-1
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
자율 점검 체제 구축

2-1
유통업자와 제품안전 협력
채널 구축

3-1
제품사고 조사 프로세스
확립

4-1
다자, 양자간 글로벌 협력
내실화

1-2
제품안전정책 지역 순회
컨설팅, 설명회 개최

2-2
소비자단체와의 정보교류
강화

3-2
리콜 수행을 위한 제품
구매자 정보제공 합법화

4-2
다수입국 대상 국내
제품안전정책 홍보 강화

1-3
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
위한 포상제도 확대

2-3
제품안전정보 DB 구축 및
활용

3-3
제품안전사고 재발방지를
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운영

4-3
저가 수입품에 대한 감시
활동 강화

1-4
자발적인 리콜을 위한
가이드라인 배포

2-4
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
컨텐츠 구축

3-4
실질적 사후관리가 가능한
전담조직으로 확대

1-5
사업자의 자발적 제품
안전 연구, 개발노력 유도

2-5
제품안전 정보 알람의
Tool로 활용

□ 제품안전 정책방향 및 핵심추진과제 (4개 정책 및 17개 과제)

[1] 사업자 및 소비자의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참여를 유도

[1]-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제품안전 자율점검 체제 구축

- ◆ 우리 원에서는 소비자단체, 시험·인증기관 참여를 통한 안전성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에 대한 감시에는 현실적인 한계
- ◆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후감시 활동체계 마련이 필요

- 중간조직을 활용한 자율안전점검체제 구축

- 업종별 협회를 안전성조사, 사고조사 등에도 참여케 하여 제품 안전 활동에 대한 주요 참여자로의 인식 전환 추진
 - * (예) 문구협회, 완구협동조합, 타이어협회 등
- 자율안전감시활동 관련 기준 마련 등 용역 사업을 통해 업종별 협회에 활동예산을 지원하여 회원사를 안전감시활동 주체로 하는 방안 도출
 - * 불법, 불량제품 생산업체 →(신고)업종별협회+제품안전협회 →(보고)기술표준원
- 또한 각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품안전정책 정보, 홍보 메일링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제공
- 자율안전감시 활동 참여가 우수한 협회에는 'Safety Guard' 마크 부여 및 포상

- 상시 'Safety Guardian' 제도 도입

- 불법제품 유통에 대한 안전성조사 민간 감시단으로서, 상시 Safety Guardian 제도를 도입
- 기존 모니터링요원(약 150여명) 외에 일반 소비자, 초등학교별 어머니회로 구성된 Safety Mom 등을 Safety Guardian으로 모집하여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안전점검 참여자 pool을 다양하게 구성
- 일정 건 이상 불법제품신고 가디언은 포인트에 따라 포상제를 실시
- 제품안전의 날 행사, 지역별 제품안전 순회 설명회, 제품안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격려 및 참여 유도
-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제품 정보는 인증대상품목 관리 등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의 핵심 소스로 활용

[1]-② 제품안전정책 지역순회 컨설팅·설명회 개최

- ◆ 안전한 제품이 생산·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, 유통업자가 제품 안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아야 함
- ◆ (일본) 매주 화요일을 '제품안전 점검의날' 세미나일로 정하여, 제조·유통업자,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
- ◆ (영국) 제품안전 검사자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,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제품안전 프로그램을 운영

- 지역단위로 중소 제조기업, 중소·영세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
- Top-Down 형태의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Q&A 방식의 컨설팅, 사업자들의 애로 청취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
- 월 1회, 1주 단위로, 신규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회 부터 우선 개최
- 향후 중앙 조직을 통한 방식에서 보다 확대하여, 지역별·업종별 중간조직을 활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

[1]-③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

◆ 사업자·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인식개선, 중간조직,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안전 감시활동 유도, 홍보 강화 등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에 대해 제품안전 활동 우수자 표창제도 도입이 필요

◆ (일본) 제품안전에 대한 의식향상 및 기업의 제품안전활동 촉진을 위해 제품안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'제품안전대책우량기업'으로 표창제도를 '07년부터 운영

* '제조·수입업자부문/소매판매업자부문' 2개 분야(대/중소기업)에 대하여 '안전한 제품 제조·판매하기 위한 대처/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대처/리콜발생시 대처/제품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대처' 4개영역으로 구분

- 안전한 제품개발 및 이의 보급을 통해 제품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 포상 분야·부문 확대를 통해 '(가칭)제품안전대상'으로 포상제도 개편
- 제품안전 자율감시활동 우수 가디언, 제품안전 R&D 우수기업, 제품안전문화확산 기여자 등으로 포상 분야 확대 [(현행) 포상분야 분류없이 유공자/기업 훈·포장 수여 →(계획) 포상분야 분류 수여]
- 제조업자, 유통업자, 가디언을 대상으로 각 부문에 대해 포상
- 연속 수상을 통해 수상에 대한 명예의식을 고취하고, 지속적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노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(상패 수여 등)

[1]-④ 제품 위해성 확인시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

- ◆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발적 제품수거(리콜)가 명문화되어 있으나, 기업들이 실제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 리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
- ◆ (일본) 제품사고발생시 제조업자들의 자발적인 리콜 권고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·교육
- ◆ (유럽) EU차원에서 제조·유통업자들에게 제품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후속조치에 대한 가이드북 제정 및 이행 권고

- 제조업자·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리콜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
 - * (제조업자) 리콜정보 공표, 실제 수행방법 등 구체적인 리콜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
 - * (유통업자) 제조업자의 리콜 수행시 매장내 정보 공표 등 협조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
- 가이드라인을 온·오프라인 형태로 자료를 구성하여, 협·단체 등 중간조직, 지자체, 제품안전 유관기관에 오프라인 무료 배포·온라인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
 - * 기업의 스스로 안전성 확인을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”(12년부터 시행) 지침도 마련, 보급

[1]-⑤ 사업자의 자발적 제품안전 연구·개발 노력 유도

- ◆ 어린이·고령자·서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취약기술 개발을 통해 어린이보호 및 서민 생활안전 확보하고
- ◆ 제품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손실 방지를 위한 제품안전 선진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제품안전 연구·개발 노력이 필요
- ◆ (일본)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소발화, 인간특성, 고분자 파괴, 생체장해, 전기용품안전 등의 기술적 데이터를 기업과 공동개발, 제공

• 어린이 · 노약자 · 저소득층 등 취약 분야 안전 위해요인 해소 및 기업공동 활용 가능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품안전 취약 기술개발 지원

* 기업의 연구능력 제고 및 개발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· 연구기관 중심의 컨소시엄 연구개발 필요

•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품분야별 연구·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제품안전기술력 확보를 위한 산·학·연 개발을 지원

• 확보된 제품안전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조성 등 제품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 인프라를 강화

[2]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제공

[2]-① 유통업자와의 제품안전정보 협력채널 구축

- ◆ 현재 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 시험·인증기관, 관세청, 지자체로부터 공산품 및 전기제품 등에 대한 제품안전 관련 정보 수집 등 협조체계 구축하고 있으나 실시간 협력에는 어려움이 있음
- ◆ **(일본)** 유통업체로부터 거래처 기업의 제품사고정보, 당해 기업에 등록된 고객 클레임, 고장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사고의 리스크 정보 추출 등을 통해 제품사고 미연 방지 대책에 활용
- ◆ **(미국)** '소매상신고모델' 등을 운용. 월마트는 자체 핫라인, 지점 매니저, 소비자통신원, 제품환불 등을 통해 제품사고정보, 불만정보 등을 수집하여 1주일에 1회 CPSC(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)에 보고
 - * 정보소스, 보고일자, 소비자정보, 생산자정보, 상해여부, 사고 일로부터 2년간 판매량, 재고량 등 (사망사고는 24시간이내 보고)

- 국내 유통업체 중 A/S를 수행하여, 제품 사고정보 등 고객 접점에 있는 기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제품안전의날을 통해 포상받은 기업, 업종별 협회를 매개체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협력체계 구축
 - * 롯데마트, 이마트, 하나로클럽 등 대형 유통업체 등
 - * 제품사고정보 수집, 제품안전의 대응체제 강화 협력, 기업 자체 이메일 서비스를 통한 제품안전 계몽활동 등을 수행
- 우리 원은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사고정보, A/S를 통한 제품위해정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·정리 후 DB화하여 안전성 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당해 유통업체는 우리 원으로부터 받은 리콜정보, 수집된 제품사고 정보 제공, 제품사용 또는 제품안전 관련 발간 자료를 소비자에게 배포함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미지 구축 가능

[2]-②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교류 강화

◆ 현재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상담 활동이 공정위 방침에 따라 하나의 채널로 통합되어,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합 관리

* '10년부터 10개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상담 업무가 공정위 방침에 따라 소비자원 포함 모두 '1372'로 통합되어 운영

* 소비자단체는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상담 건수당 2,200원을 받으며, 10개 소비자단체에서 연간 52만여건의 소비자 상담사례 접수

* 일반 소비자단체는 수집된 소비자 상담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

◆ 식약청은 안전에 있어 제품보다 국민들이 즉각적·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위험의 정도가 큰 식품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와의 직접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결 모색

*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연단위 위해정보 수집·분석 용역을 발주, 10개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관할 품목의 위해 정보를 월단위로 획득

•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산품·전기용품 분야의 위해정보 수집·분석 보고서 용역을 발주

* 식약청과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위해정보 수집체계 구축

• 우리 원에는 월단위로 보고서를 제공하며, 위해정보 동향 등을 파악을 위해 위해정보 분석결과에 대한 월간 회의 개최

[2]-③ 제품안전정보 DB 구축 및 활용

- ◆ 인증 관리 및 안전성조사 품목 선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 인증·시험기관으로부터의 부적합 정보,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해 정보, 제품사고정보 등 제품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성 있음
- ◆ (미국) NEISS(전자위해감시시스템)를 통해 수집된 제품사고정보, 분석결과 정보를 DB화하여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관리
- ◆ (일본)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제품사고정보를 DB화,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'73년부터 제품사고조사 수행을 통해 체계적인 제품사고조사 기법 및 DB 보유를 통해 리스크 분석을 수행
- ◆ (유럽) EU내 각 국별로 제품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자 및 각국에 권고

- 소비자단체, 인증기관, 전기제품안전협회 등 제품안전 유관단체·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제품 위해 정보, 소비자의 위해도 신고사항 및 안전성조사(시판품조사 포함) 결과 등 제품 위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
 - * 인증품목 변화관리 및 안전성조사 대상 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인증품목 변화관리 등의 피드백체계로 관리
- 국가적 차원의 제품사고 리스크 분석·평가를 위하여 동 DB를 활용하여 1년 단위로 제품안전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수행
 - * 전문가 구성을 통한 리스크 평가 기법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
- 개발된 평가기법의 수정, 성과분석을 통해 제조업자들도 각 기업별로 제품안전 리스크를 제품출시 전 단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

[2]-④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콘텐츠 구축

- ◆ 현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은 안전인증검색, 사후관리, 법령마당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소비자 참여 촉진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법제품 신고센터 등의 활성화는 다소 미흡
- ◆ (미국) CPSC의 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제품안전 관련 정보·자료 열람, 안전사고 및 불만접수, 위해성 제품 신고, 리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참여형 정보망으로 활성화
 - * NEISS(전자위해감시시스템), 기업의 위해공산품보고제도, 소비자상담, 자체 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수집
- ◆ (유럽) EU의 RAPEX(소비자안전긴급경보시스템)은 EU 27개국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 총 30개국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정보에 대한 신속정보시스템을 운영
 - * 위해제품 발생시 관련 정보를 각 국의 RAPEX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파

- 유통 단계에서 불법제품 및 위해정보 신고시 즉각 회신·답변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대 운영(제품안전협회가 언론보도, 소비자신고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)
 - * 미국의 CPSC는 SNS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으며, 실행조직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상에서 즉각적인 조치(안전성조사)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
- 어린이 안전에 관한 코너를 메인에 배치하고, 원스톱으로 어린이 안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링크 구축하고 이후 노인, 장애인 등에 대한 별도 코너 신설로 점차 확대
-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사고정보 및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도 실시

[2]-⑤ 제품안전정보의 알림 Tool로 활용

◆ 현행의 제품안전인증 정보 제공 위주의 Safetykorea를 보다 적극적인 제품안전정책 알림의 채널로 활용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

- 제품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한 제품 설계·제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R&D·생산 인력을 대상으로 만든 제품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도 콘텐츠로 제공
- *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영상 자료, 웹북 형태의 자료 등으로 가독성 높게 구성하여, 다운·배포 가능토록 제공
- 인증품목 변화관리를 통해 위해성이 높아져 규제가 강화된 제품 및 안전성조사(시판품조사)결과 위해정보가 발견된 제품, 위해성이 증가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'Urgent Alarm'(가칭) 시행
- * 상기 위해성이 상향된 제품에 대한 경보 개념의 서비스로 소비자의 인식 및 주의 환기 목적에서 추진(트위터, SMS, 메신저 등)

[Urgent Alarm 종류(예시)]

구 분	대 상	비 고
Urgent Alarm 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율안전확인품목에서 안전인증품목으로 상향 조정시 • 신제품 및 기존제품이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진입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핫코너 마련을 통해 메인 화면에 별도 배치
Urgent Alarm I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성조사(시판품 조사)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어, 대국민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 보도자료, 안전성조사(시판품조사), 리콜정보 게시판과 링크 되는 구조로 구현

[3] 제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

[3]-① 제품사고 조사 프로세스 확립

- ◆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제품사고조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이를 위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설립 등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중에 있으나, 조사 프로세스 구체화가 필요
- ◆ (일본) 경제산업성에 의한 “중대”제품사고정보 공표제도와 NITE에 의한 “비중대”제품사고정보 수집제도를 운영
 - (경제산업성) 중대제품사고 발생시 정보수집 →공표 →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→공표(→후속조치)
 - (NITE,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) 비중대제품사고 발생시 제조업자·수입업자 등이 NITE에 보고하도록 권장 →수집된 사고상황 정리 및 웹사이트 공표 →특정 사고는 사고조사 수행 →사고조사결과 공표(→후속조치)
- (사고인지)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위해성 증가품목, 소비자 신고품목 등을 자체 수집하거나, 제조업체, 유통, 판매업자 신고 정보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인지
- (사고조사) 사고인지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원이 주도하고 사고 발생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고조사센터에서 조사를 수행
 - * 사고조사 대상 범위는 공산품·전기용품으로 하되,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생활제품을 모두 포함
- (자문위원회) 필요시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
- (결과조치)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리콜권고, 리콜명령, 대외공표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을 실시
 - * 관세청, 조달청 등에 중대결함 제품의 국내 반입 금지, 조달 중단 등의 협조를 요청
- (공표) 대상 제품의 Lot번호, 사고내용·원인 등을 언론, 우리 원 정보망 및 Urgent Alarm등을 통해 공표
- (종결) 리콜의 효율적 조치상황을 체크하고 관리(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 접수)

[3]-② 원활한 리콜 수행을 위한 제품구매자 정보 제공 합법화

- ◆ 통상 구매자에 대한 정보는 유통업체에서 갖고 있어 제조업체는 자발 또는 강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신문 등 언론에 광고하여 리콜을 수행
- ◆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통해 제한된 목적 하에서 수집·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유통업체의 구매자 정보를 제조업체가 활용할 수 없어 리콜수행의 애로가 예상
- ◆ (일본) 제조업자의 리콜 수행시 판매업자가 보유한 고객리스트 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
 - * 위해방지명령 및 리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(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)

- 유통업체에서 보유한 구매자 정보를, 리콜목적에서 리콜 수행 기업이 유통업체에 요청하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구매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
 - *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 개정요구를 소관 부처에 하거나 제품안전기본법 내 명문화 개정을 추진

[3]-③ 제품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·운영

- ◆ 연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,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, 사고원인 규명은 미흡하며,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· 확산방지 등을 위해, 사고원인규명 조사가 필요
- ◆ (선진국) 미국, 일본 등의 경우에도 동일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, 사고조사전담조직에 의한 사고조사제도를 운영

· 제품사고의 경위·원인을 과학적·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, 외부 전문기관을 사고조사센터로 지정·운영하되 가소제 등 유해물질 분야별, 공산품·전기용품 품목별로 분석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시험·연구기관을 활용

* 화재사고 · 감전사고 · 유해물질 확산 사고 등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분야별로 사고조사센터를 지정 · 운영

· 사고조사경험 · 분석능력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지정·운영하고, 필요시 안전인증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하고 사고유형·제품분야 별로 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되 KOLAS 지정을 받은 비영리 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지정

※ 사고조사센터 지정(案/例) : 기계/물리적 사고(한국기계연구원, 포항산업과학연구원,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), 화재/감전사고(전기안전연구원, 방재시험연구원, 산업기술시험원,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)

[3]-④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전담조직으로 확대

- ◆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시행(11.25)에 따라 수행하는 제품결함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업무는 조사, 시험, 평가 등 복합적 업무이고,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사고조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◆ 현행 정규직 2명(팀장 1명, 연구사 1명)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함에 따라 년차적으로 조직 확대 및 인원 충원이 필요
 - * (미국) CPSC 7개부서 530여명(조사전담부서 42명), (일본) NITE 4개부서 400여명(조사전담부서 35명)

- 사고조사, 시험, 평가 등 사고조사업무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고,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'제품사고조사단'으로 조직 확대 추진
 - * 제품사고조사단을 2개팀의 과단위로 운영하고, 분야별 평가요원을 별도 채용

[제품사고조사단 구성(案)]



[4]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안전성 취약 품목에 대한 관리 내실화

[4]-① 다자-양자간 글로벌 협력 내실화

◆ 세계각국은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(ICPHSO, ICPSC, ISO/COPOLCO 등)를 결성, 리콜표준화·인증기준 부합화·글로벌 리콜정보 공유, 제조자 이력추적제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음

* ISO/COPOLCO(국제소비자정책위원회), ICPHSO(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), ICPSC(국제소비자제품안전규제담당공무원회의)

◆ 미·EU 등은 수입제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역국가, 불량 제품 다수 발견 국가와 MoU 체결을 통해 협력활동 강화

* (미국) CPSC는 25개국*과 제품안전 MoU를 체결하여, 제품위해정보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, 중국내 CPSC 북경사무소 설치, 중국내 공무원에 대한 미국 제품안전정책 교육 및 미국 파견 근무 등의 제품안전관리 추진

• ISO/COPOLCO, ICPHSO, ICPSC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

* ICPHSO 국제회의 서울 개최(일자 : 10.31~11.1, 2일간, 30여개국 300여명 예정)

• OECD가 추진중인 글로벌 리콜 정보 공유시스템과 국내 제품 안전정보망을 연동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

* OECD는 글로벌 리콜 DB 웹 구축 추진 중이며 사고제품의 위해요소 등 관련정보를 소비자, 외국 정부(제조자)에 실시간 제공 예정

• 국제기구(ICPSC, 국제소비자제품안전 정부협의회)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'제조자 이력 추적제'에 참여

* 한 국가에서 제품이 리콜되면 그 제품의 판매이력을 추적해 다른 국가에서도 리콜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리콜협력 시스템(시범품목 : 유모차)

• 중국, 동남아 등 수입국, 불량제품 다수 발견국가 등과 MoU 체결을 통한 제품안전 협력체계 구축

[4]-② 다수입국 대상 국내 제품안전정책 홍보 강화

◆ 다양한 신종 제품 및 불법·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, 최근 교역 자유화로 인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외국계 안전인증 기업의 수가 국내기업을 추월

*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약 60% 이상이 중국, 동남아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며, 특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총 19,500여건 중 67%가 외국산 제품이고 이중 83%가 중국산 제품(2009 기술표준백서)

◆ 안전성 조사 결과 수입제품 중 적지 않은 수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·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

* '08년도에 실시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, 107건의 불법제품 중 80건이 수입품(2009 기술표준백서)

◆ (미국) 소비자 제품의 디자인에서 제조과정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은 물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핸드북을, 중국어 번역본으로 제작·배포

•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, 저가제품이 다수 수입되는 국가, 안전성 조사 결과 불법제품이 다수 발견되는 국가의 언어로, 제품안전정책 교육·홍보자료를 번역하여 수입업자에게 배포

* 제품안전인증제도 등 제품안전정책·제도에 대해서 당해국민이 쉽게 이해하고,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 자료를 작성

• 당해국 정부기관, 당해국 협회 등 중간조직, KOTRA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, 주한 대사관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배포

* 제품안전 MoU체결시 양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품안전정책 안내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

[4]-③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

- ◆ 저가로 수입되는 제품 증가와 함께 위해도가 높은 불법·불량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
- ◆ 선진국들은 중국, 동남아 등으로부터 저가 수입제품이 증가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중국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
- ◆ (미국) 중국내 제품안전센터를 개소하여,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. CPSC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협력하여 주요 수출입 항만에서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
- ◆ (유럽) EU는 제품안전시스템 RAPEX와 중국 AQSIQ(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)간 협약을 통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위해정보 및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를 RAPEX와 공유하도록 시스템 구성

-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산 제품이 주로 수입되는 인천, 부산 세관 등에 우리원 직원 또는 중간조직의 직원을 시범 파견하여 통관 절차 시 불법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
 - * 미국, EU 등에서 추진한 對중국 수입품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협력을 통한 특별관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나, 대외 협력의 애로를 감안시 국내에서 수입품 감시 강화가 보다 합리적임
-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아 전 세관으로 확대하거나 동일 세관에 파견되는 직원수를 늘리는 형태로 확대 추진
- 또한 조달청과의 협력(MoU)을 통해 조달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합동 점검 추진

□ 핵심과제별 추진일정

핵심과제	주관/협조부서	2011	2012	2013
(1-1-1) 중간조직을 활용한 자율안전점검 체계 확충	안전품질정책과 제품안전조사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	점검단 구성	자율안전감시 활동 및 우수조직 포상	
(1-1-2) 상시 Safety Guardian 제도 도입	안전품질정책과 제품안전조사과	기본계획	5개시도 시범	15개시도 확대
(1-2) 제품안전정책 지역순회 컨설팅·설명회 실시	안전품질정책과	활동계획, 3개시도	6개시도	6개시도
(1-3)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	안전품질정책과	기본계획	포상종류, 등급 확대	
(1-4)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	안전품질정책과	가이드라인 작성	제조, 유통업자, 지자체 등에 안내	
(1-5) 사업자의 자발적 제품안전 연구·개발 노력 유도	안전품질정책과	개발지원(20업체)	개발지원(30업체)	개발지원(50업체)
(2-1) 유통업자와의 제품안전정보 협력채널 구축	제품안전조사과	기본계획	관련업체 채널구축	단체/기관채널구축
(2-2)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교류 강화	제품안전조사과	운영계획	10개단체	
(2-3) 제품안전정보 DB구축 및 활용	제품안전조사과	기본계획, 설계	DB 프레임 구축	DB 확대
(2-4)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컨텐츠 구축	제품안전조사과	벤치마킹	실시간모니터링 프레임 구축	
(2-5) 제품안전정보 알림 Tool로 활용	제품안전조사과	모형개발	Urgent Sys 구축	교육, 홍보
(3-1) 제품사고조사 프로세스 확립	안전품질정책과 제품안전조사과	운영요령 고시, 사고조사제도 운영		
(3-2) 원활한 리콜 수행을 위한 제품 구매자 정보제공 합법화	안전품질정책과	개선계획	법령개정(자체)	
(3-3) 제품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·운영	제품안전조사과	사고조사센터 지정	사고조사센터 운영	
(3-4) 실질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전담조직으로 확충	제품안전조사과	기본계획	전담인력 및 조직 확대	
(4-1) 다자, 양자간 글로벌 협력 내실화	안전품질정책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	ICPHSO회의개최	다자-양자간 협력 체결(MoU 등)	협력 확대
(4-2) 다수입국 대상 국내 제품안전정책 홍보강화	안전품질정책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	기본계획	중국	중국 외 아시아권
(4-3)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	안전품질정책과 제품안전조사과	조달청과 협력	관세청과 협력(중간조직 활용)	